

서울고등법원
변 론 준 비 기 일 조 서

2차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기 일 : 2006. 5. 12. 10:20
판	사	이	현	숙	장 소 : 서관 305호
판	사	이	우	철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고지된 변론 기일 : 2006. 5. 26. 17:0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항소인) 김명호 출석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용 출석

재판장 판사

원고의 2006. 4. 13.자 변론의 녹취(속기)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녹취를 하여야 할만큼 복잡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 고지

원 고

만약 재판내용이 잘못 기재되면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 판사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고, 원고가 조서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 고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 판사

현재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원 고

예. 소지하고 있습니다.(이때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다.)

재판장 판사

지난 기일에 법정에서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 고

없습니다.

재판장 판사

원고는 지난 기일 재판진행 사항을 인터넷에 올린 일이 있지요.

원 고

예. 올렸습니다.

재판장 판사

어떤 경위로 올렸습니까.

원 고

그 내용에 대하여 말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 판사

녹음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어떻게 재판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원 고

기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판장 판사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원 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하면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요.

원 고

예.

재판장 판사

원고는 이 사건 진행과정을 녹음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녹음을 허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

2006. 5. 1.자 방어방법각하신청은,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 고지

원 고

피고는 준비명령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재판장 판사

그렇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 고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을 재판장은 인정합니까.

재판장 판사

그것은 판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원 고

2006. 4. 7.자 및 2006. 4. 21.자 준비서면 진술

피 고 대리인

2006. 5. 11.자 준비서면 진술하고, 93년도 1학기부터 95학년도 2학기까지의 성적기록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평가표들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원고 서증, 증인등)

변론준비절차 종결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